EDUCATION

방재분야특수전문교육

교육문의 : 한국방재협회 교육홍보부
– 홈페이지 : kodipa.or.kr
– 전　　화 : 02-3472-8073~5, 팩스 : 02-3472-8064
– 이 메 일 : hikdpa.empal.com

Ⅰ 배경 및 목적

Ⅱ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

• 주요내용

– 재난관리 및 자연재해관련 법규

–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,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, 재해복구사업평가, 풍수해비상대처계획수립 등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무

• 기대효과

–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 응시 자격 부여

– 합격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기술인력 소방방재청 등록

Ⅲ 교육대상

• 방재관련분야 전공자로서 기술자격 및 일정기간 경력을 보유한 자(기사급 이상)

• 「국가공무원법」또는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

※ 근거 :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 2(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)

(1) 필수인력 확보기준

인원수	기술인력	전공분야
2~3인 이상	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중 1인 이상	
	2.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나. 전공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. 전공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전공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자 라. 전공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공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마. 「국가공무원법」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	–토질 및 기초공학 –수자원공학
	3. 지진부분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분야를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구조 기술사 나.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	–토목구조공학

비 고 : 지진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분야를 단독으로 등록하는 때에는 수자원분야 기술자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(2)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

(가)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

인원수	기술인력	전공분야
3인 이상	1.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· 토목구조기술사 · 도로 및 공항기술사 · 농어업토목기술사 · 산림기술사 · 지질 및 지반기술사 나. (1)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	–토목시공학 –토목구조공학 –도로 및 교통공학 –농업토목공학 –지질 및 지반공학 –산림공학
	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. 전공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.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. 전공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. 전문대학에서 전공분야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	–토목공학
	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1.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	–도시계획학

(나)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

인원수	기술인력	전공분야
3인 이상	1.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나. (1)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	–도시계획학
	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(2)(가)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	–토목공학
	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(2)(가)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	–도시계획학

(다)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· 분석

인원수	기술인력	전공분야
3인 이상	1.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.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· 토목구조기술사 · 도로 및공항기술사 · 상하수도기술사 · 건설안전기술사 · 농어업토목기술사 · 산림기술사 나. (1)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	–토목시공학 –토목구조공학 –도로 및 교통공학 –상 · 하수도공학 –건설안전공학 –농업토목공학 –산림공학
	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(2)(가)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2인 이상	–토목공학

(라) 비상대처계획 수립(풍수해부문)

인원수	기술인력	전공분야
4인 이상	1.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항만 및 해안기술사 ·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· 건설안전기술사, 농어업토목기술사 나. (1)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	–해안항만공학 –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학 –건설안전공학 –농업토목공학
	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(2)(가)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2인 이상	–토목공학
	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· 건설안전기사 · 도시계획기사 또는 (2)(가)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	–토목공학 –건축공학 –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공학 –도시계획학

Ⅳ 교육과정 체계 및 수료기준

과 정	교과목	학습분량	수료기준	비 고
기본과정	• 재난관리론 • 자연재해법규	41차시 (27시간)	• 진도율 : 80%이상 • 평가 : 개별 과제평가	• 온라인 교육
전문과정	• 풍수해저감종합계획 • 사전재해영향성검토 • 재해복구사업평가 • 풍수해 EAP	109시간	• 출석 : 80%이상 출석 • 평가 : 조별 과제평가	• 오프라인 교육

※기본과정, 전문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 대해 수료증 교부.

Ⅴ 추진실적 및 성과

- '06년 12월부터 13년 5월현재까지 총 52회 교육실시, 2,447명 교육수료
  - 업체종사자 : 2,228명(91%), 공무원 : 135명(5.6%), 기타 : 84명(3.4%)
-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 총 26회 실시('13.5월 현재), 2,263명 인증서 취득
- 「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」로 182업체 소방방재청에 면허등록(13.5.10)

Ⅵ 2013년 교육일정계획

구 분		교육기간	교육장소	비고
제1회	주간반	'13. 2.13 ~ 3. 7(15일)	서울 서초	완료
제2회	주간반	'13. 3.11 ~ 3.29(15일)	서울 서초	완료
제3회	야간반	'13. 4.16 ~ 6. 5(28일)	서울 강남	교육중
제4회	야간반	'13. 6.10 ~ 7.17(28일)	광주광역시	모집중
제5회	주간반	'13. 8.21 ~ 9.10(15일)	지방(미정)	예정
제6회	야간반	'13. 9.25 ~ 11. 5(28일)	서울	예정
제7회	야간반	'13.10.15 ~ 11.22(28일)	지방(미정)	예정

※교육기간 및 장소는 교육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제도 개선
(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)

■ 추진 배경

- '07년도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 제도를 도입하였으나, 대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 없어, 건설기술관리법의 "건설기술" 자격 조건 등을 준용함으로써 방재전문인력으로 인증 받은 기술자의 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
- 방재전문인력의 경력을 관리하고, 대행자의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객관적인 심사여건을 마련하며,
- 대행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도입하여 방재전문인력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

■ 주요 내용

①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무 추가

- 대행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가 : 2개(안 제38조제1항)
  -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
  -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

② 방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절차 규정 도입

- 건설분야와 구분되는 방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이 없어 방재전문기술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(안 제38조제3항)

③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정보체계 구축 · 관리

-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정보 관리를 통해 대행자의 업무실적과 기술인력의 경력 정보체계 구축 규정 마련(안 제44조의2)

④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실태점검 근거 마련

-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대행자 실태 점검을 위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(안 제41조의2)

《 자대법 개정안(요약) 》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① 업무범위 확대	• 5개 분야 업무 * 풍수해종합계획, 사전재해, 비상대처계획, 복구사업 평가, 기타 업무등 • 자료조사 · 서류작성 등	• 2개 추가 *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· 사업계획의 수립 *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
② PQ제도	• 지자체 심사 시 "건설기술관리법"의 PQ제도 준용	• "자연재해대책법"에 방재분야 PQ제도 도입 · 활용
③ 실적/경력 관리	• 해당 없음	• 방재분야 전문기술자의 경력신고 · 관리 • 대행업체의 실적 조사 · 관리

■ 향후 추진일정

•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추진 : '13.1~6월
(제19대 국회 제출 ⇒ 현재 행안위 전체회의 계류중, '12.11.19)